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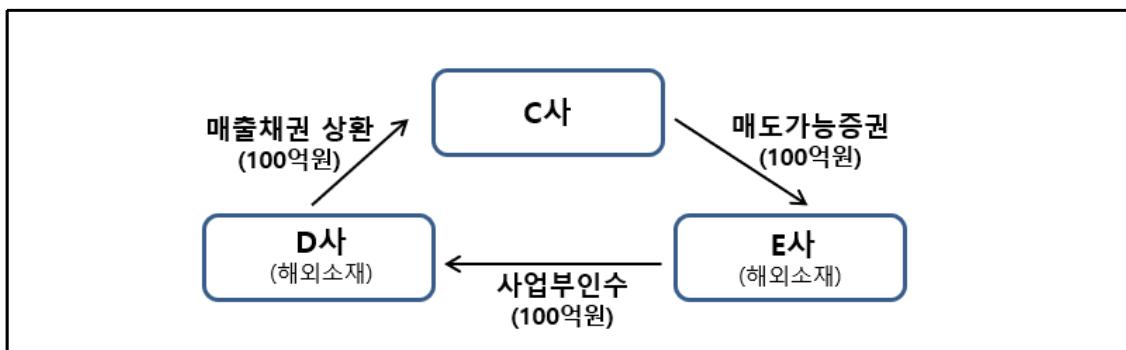
감리지적 사례 FSS/1912-16 :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 쟁점분야 : 매도가능증권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0.1.1.~20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C사는 해외거래처 D사의 매출채권(100억원)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추가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E사(외국소재, Paper Company)의 매도 가능증권을 이용하여 C사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C사와 D사, E사의 거래 개요



매도가능증권 투자 당시 E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E사가 인수한 D사의 사업부 또한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C사는 향후 매출이 급등하는 것으로 추정한 외부평가보고서를 기초로 E사 매도가능증권(전환사채)을 100억원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D사 매출채권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기존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환입(30억원)하였다. 외부평가시 20X2년 매출액을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은 10억원에 미달하여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고 자본잠식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회사는 결산시 동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식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는 20X4.2월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한 후, 동 자금을 E사에 송금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입금토록 하여 매도가능증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장기 연체된 D사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E사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이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측정) 문단 5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며,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 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C사가 20X0년말 매도가능증권 취득시 공정가치를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후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동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면밀히 수행하지 않았고, 허위로 매도가능증권이 일부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여 매도가능증권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이해하고, 관련 경영진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경영진측 전문가의 발견사항이나 결론의 관련성·합리성, 다른 감사증거와의 일관성, 그리고 이들이 재무제표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전문가가 유의적 가정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러한 가정과 방법의 관련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된 상기 거래 내역을 파악하였음에도, 외부평가전문가가 사용한 가정과 전제 등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그 측정방법이 재무·시장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또한, 매도가능증권 취득 후 매출 실적이 평가시 매출 추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연체가 발생하는 등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평가전문가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평가기법이나 가정을 사용해야 하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감사인은 손상징후가 확인된 자산과 연관된 거래에 대해,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